

#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(박순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7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4월 01일  
발 의 자 : 박순규 의원(1명)  
찬 성 자 : 김경영, 김기덕, 김재형,  
김제리, 김태수, 김평남,  
김희걸, 박기열, 박기재,  
박상구, 성흠제, 송명화,  
송아량, 양민규, 이영실,  
임종국, 장상기, 전석기,  
최 선, 최웅식, 최정순,  
황규복 의원(22명)

## 1. 제안이유

- 청계천 시설물인 청계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시민이 이용함에 있어서 수위 상승 또는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시장이 시설물 사용을 중지하거나 취소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이용시설 사용의 취소·정지 등 필요 조치 항목에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. (안 제8조 제4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</li> <li>2.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3.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</li> </ol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margin-right: 50px;"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·정지) 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<u>감염병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</li> </ol>